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7호

「상주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 편법설치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, 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(안 제18조)

- 경사도 40퍼센트 미만인 토지 → 경사도 **25도 이하인 토지**

나.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(안 제18조의2)

- 10호 미만 인가 중 독채인 경우 허가기준에서 제외
-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지 **1,000미터 이내**, 문화재 및 전통사찰 **500미터 이내**,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 설치 제한
-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**3미터 이상** 이격하여 완충공간 확보
- 경사도 **15도 이하인 토지**에 설치 가능

다.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(안 제18조의2)

- 10호 이상 인가(人家),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, 관광지, 문화재,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 **2,000미터 이내** 설치 제한
- 10호 미만 인가(人家), 축양장 등 생산시설 **1,000미터 이내** 설치 제한

라.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(안 제18조의2)

- 비도시지역 **2년이 경과한** 건축물 위에 설치 가능하되, **도시계획심의 대상**
- 수평투영면적이 **지붕면적 이내** 설치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